

1. 개정이유

현행 지하수법은 일반오염시설과 오염유발시설로 구분하여 같은 지하수 오염 발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된 오염 정화체계로 적용되고 있으며, 특히 오염유발시설 중심으로 설계되어 일반오염시설에 대한 정화명령 체계의 법적 완결성 미비로 행정 집행력 저하 등 지하수 오염 대응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일반오염시설에 대한 정화이행기간 산정, 지하수 오염평가보고서 작성·제출 및 정화계획 수립·승인 절차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일반오염시설의 정화이행기간 산정에 대한 근거조항 신설(시행규칙 제29조제7항, 제8항 신설)

- 1) 일반오염시설에 대한 오염정화 이행기간의 근거규정을 상위입법화(예규→시행규칙)하고, 이행기간의 산정·연장에 관한 세부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함

나. 일반오염시설에 대한 정화명령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작성·제출 및 정화계획의 수립·승인 절차의 신설(시행규칙 제29조의2, 제29조의3 신설)

- 1) 현재 예규로 운영중인 오염평가보고서 작성·제출, 정화계획의 수립·승인 등 절차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영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명령을 할 때에는 지하수오염물질의 종류·규모, 정화의 실효성 및 기술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정화이행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정하되,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 회 1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⑧ 제7항에 따른 정화이행기간의 산정 및 연장에 관한 세부기준은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9조의2(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)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위해성, 오염범위, 오염원인에 대한 평가 및 오염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(이하 “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”라 한다)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지침, 작성방법 및 작성

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29조의3(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수립 및 승인) ① 제29조의2에 따라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제출한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보고서를 기초로 오염원인에 대한 평가, 오염방지대책 및 오염지하수의 정화 등에 관한 판단에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·평가하여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화계획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작성내용·방법, 제출시기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) ① ~ ⑥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9조(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<u>⑦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영 제26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명령을 할 때에는 지하수오염물질의 종류·규모, 정화의 실효성 및 기술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정화이행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정하되,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u>
<u><신설></u>	<u>⑧ 제7항에 따른 정화이행기간의 산정 및 연장에 관한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/u>
<u><신설></u>	<u>제29조의2(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)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</u>

<신 설>

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위해성, 오염범위, 오염원인에 대한 평가 및 오염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(이하 “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”라 한다)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지침, 작성방법 및 작성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29조의3(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수립 및 승인) ① 제29조의2에 따라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제출한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보고서를 기초로 오염원인에 대한 평가, 오염방지대책 및 오염지하수의 정화 등에 관한 판단에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·평가하여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

라 제출된 정화계획을 검토하여
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
승인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오염
지하수 정화계획의 작성내용·
방법, 제출시기 및 승인절차 등
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
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